

韓國女性犯罪의 現況分析과 그 豫防策

金 秀 吉

目 次

- | | |
|-----------------------|--------------------|
| I. 序 論 | 2. 女性犯罪의 社會的 背景 |
| II. 女性犯罪의 動向 | IV. 女性犯罪의 豫防과 事後對策 |
| 1. 女性犯罪의 量的 傾向 | 1. 女性犯罪의 豫防策 |
| 2. 女性犯罪의 質的 傾向 | 2. 女性犯罪의 事後對策 |
| III. 女性犯罪의 原因과 社會的 背景 | V. 結 論 |
| 1. 女性犯罪의 原因 | |

I. 序 論

犯罪은 그 社會의 所產物로서 대체로 人間의 社會生活 過程에서 個人과 個人 또는 社會와 關係에서 發生하는 일종의 社會病理 現象이다. 오늘날 社會가 한 形態에서 다른 形態로 急速히 變하면서 犯罪現象도 質·量面에서 漸次 相異한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動機나 原因과 方法도 독특한 樣相을 보여 주고 있어 이미 深刻한 社會問題로 抬頭되어 지고 있다. 그런데 그 犯罪의 一部가 女性에 의하여 惹起되고 있는 것은 一般犯罪 못지 않게 刑事政策上 問題의 深刻性을 더 加重시키고 있다. 비록 刑事統計上으로는 女性犯罪가 男性犯罪에 比하여 현저하게 적고 惡性의 程度가 낮기는 하나, 女性犯罪가 社會에 던져 주고 있는 影響을 勘案한다면 그대로 가볍게 보아 넘길 性質의 것이 아니다.

家庭에서 子女의 養育 등 家事를 運營·主導하고 社會에서 活動하는 女性의 逸脫行爲가 增大할 때 그것은 自身을 荒廢化 시키고 家庭破綻을 招來하며 나아가서는 人的資源面에서도 상당한 損失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점에서 女性犯罪의 問題는 疎忽히 할 수 없는 領域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男性犯罪에 대한 여러 傾向성과 다른 面을 內包

2 는 문 집

하고 있는 女性犯罪에 關하여는 充分한 科學的 研究檢討가 等閑視하는 傾向이 있다. 그 主要한 要因은 男女別 人口構成比는 대체로 同等한 데 反해 法律의 實施作用에 低觸되는 女子의 數가 항상 男子에 比하여 현저하게 적은데 起因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¹⁾

男女間에 있어서 女性犯罪가 低率性을 나타내는 根本要因은 性別에서 오는 生物學的인 條件과 女性의 社會活動의 範圍가 男性에 比하여 狹少하고 對人接觸이 限定되어 있는 對社會的인 것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나 社會構造가 複合的인 性格을 띠면서 最近에 이르러 女性의 犯罪量은 增加一路에 있고 犯罪의 性質도 多樣性을 나타내고 있음이 統計上으로 證明되고 있다.

우리 나라 大檢察廳 犯罪分析에 의하면 女性犯罪가 1971 年度 以來 해마다 11.7%씩 增加해 오다가 1980 年度에는 무려 101.9%가 增加하였으며, 總 犯罪에 대한 構成比率도 12.1%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지난 10年間 竊盜犯은 불과 49.5%만이 增加한 데 比하여 賭博 福票犯은 579.3%, 詐欺가 378.0%, 姦通이 302.0%, 橫領·背任이 282.5%, 食品衛生法 違反犯이 255.1%로 急增하였다.²⁾ 이러한 女性犯罪의 增加와 質의 變化는 社會가 都市化하고 産業社會로 發展하면서 固有한 倫理觀과 家族制度의 崩壞 및 女性의 社會的 進出에 따른 附隨的인 結果로 풀이될 수 있다.

韓國 傳統社會에 있어서의 女性은 封建的인 社會構造와 儒教倫理的 思想에 의하여 女性의 社會參與가 拒否되어 왔던 관계로 그만큼 女性이 社會에 접촉할 機會가 微弱하였다. 그러나 8.15解放과 더불어 밀려온 自由民主主義思想과 人權平等思想의 영향은 傳統的인 社會制度에서 벗어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卽, 女性들은 점차적으로 制度的인 面에서나 社會的인 面에서 社會活動의 獎勵 내지 保障 받게 되어 女性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가 두드러지게 向上되고 이에 따라 社會의 全領域에서 女性의 參與가 活潑하여 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60年代 後半부터 우리 나라 經濟構造의 工業化·産業化가 加一層 女性의 經濟的 社會的 活動을 要求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그 機會도 점차 늘어가고 있어서 從來와 같은 子女의 養育과 家事를 중심으로 한 生活로부터 점차 生存競爭의 소용돌이 속에 男性과 더불어 뛰어들게 됨에 따라³⁾ 그 活動範圍는 男性에 못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犯罪面에도 反映되어 女性犯罪는 從來와는 다른 特異한 現象을 띠게 하여 우리들 社會에 미치는 惡影響은 대단하다. 이런 時點에서 女性犯罪의 動向을 把握하고 이를 分析하여 그 原因을 探究하고 나아가서 그 豫防策을 講究함은 매우 重要한 일이다.

1) Walter C. Reckless, *The Crime Problem*, 4th.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67), p. 148.

2) <表-1>과 <表-2>參照.

3) 金永泰, "女性犯罪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論文集 第 19輯 人文·社會科學篇(1975), p. 385.

本 論文은 이러한 重要性을 認識하면서 大檢察廳에서 發刊하는 犯罪分析(1971~1981年)을 土臺로 再編成하여 우리 나라 女性犯罪의 現象을 多角의로 分析하고 그 原因을 糾明함과 아울러 女性犯罪의 豫防策과 事後對策 方案을 論述하고자 한다.

II. 女性犯罪의 動向

1. 女性犯罪의 量的 傾向

1) 女性犯罪와 男性犯罪와의 對比

一般의으로 世界 各國의 男女의 人口 構成比率은 대개 同數인 데 우리 나라의 경우도 거의 同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犯罪者의 性別 集計에서 현저히 드러나는 점은 女性犯罪가 男性犯罪에 比하여 훨씬 僅少하다는 사실이다.

1980年 10月 1日 現在 우리 나라 總 人口 37,448,836名 중 男性人口가 18,764,130名이고 女性人口는 18,684,706名으로 女性이 全 人口의 49.9%를 차지하여 男性과 거의 同數이다. 그런데도 男女間의 犯罪量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表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80年度 1年間의 總 犯罪人數가 752,161名인 데 그 중 女性犯罪者는 81,059名에 不 過한 12.1%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⁴⁾

이와 같이 女性이 男性에 比하여 犯行率이 낮은 理由는 女性犯罪는 主로 家庭內에서 일어나며 그 대부분이 摘發되지 않고 隱蔽犯罪(hidden crime)로 남는 率이 높고⁵⁾ 慈悲心이나 同情에서 當局에 報告되는 例가 적기 때문인 데 실제상으로는 더 높을 것이라 豫想된다. 그러나 肉體의으로 男性에 比해서 劣等하며 社會的 經濟的 活動에 參與하는 範圍가 좁은 女性들이 犯罪에 觸될 機會는 아무래도 적고⁶⁾ 女性의 受動性 溫和性 등 女性體質이 特異性으로 男性보다 犯行率이 낮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結果라 생각된다.⁷⁾

4) 美國의 경우 FBI의 統計에 의하면 總犯罪者 가운데 女性이 차지하는 比率은 1973 年에 15.4%, 1975年에 16.2%, 1977年에는 16.4%이며, 日本은 1971年에 13.3%, 1973年에 14.3%, 1975年에는 16.9%로서 매년 增加하는 傾向이다.

The World Almanac and Books of Facts (New York: Newspaper Enterprise Association, Inc. 1971~1979), 日本 警察廳, 昭和 51年版, 警察白書 1976, p.92.

5) O. Pollak, The Criminality of Woma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0), pp.1~7.

6) D.R. Taft, Criminology (New York: Macmillan, 1956), p.115.

7) Sutherland와 Cressey는 各國의 女性犯罪에 관한 統計表를 分析하여 女性犯罪者의 構成比率은 ① 國家(nation) ② 各 集團에 있어서의 兩性의 社會的 地位(the social positions of the sexes in different groups) ③ 居住地域의 規模(the size of community residence) ④ 年令(age) ⑤ 한 都市에서의 居住地域(area of residence)

〈表 1〉 性別 人口增加指數와 犯罪增加指數

區分 年度別	人 口 數		犯 罪 者 數	
	男 性	女 性	男 性	女 性
1971	15,990,289	16,014,306	300,217	40,147
1972	16,358,979	16,310,073	384,828	53,758
1973	16,626,004	16,624,244	341,532	49,631
1974	16,813,000	16,646,000	317,985	42,438
1975	17,445,246	17,233,726	400,085	50,677
1976	17,641,318	17,699,698	577,553	68,006
1977	17,965,961	18,048,895	598,083	65,348
1978	18,266,079	18,362,406	562,848	60,617
1979	18,630,918	18,723,965	620,271	62,847
1980	18,764,130	18,684,706	671,102	81,059

*는 백분율임(%)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統計年鑑(1971~1981) 및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1981(通券第39~第78號)

2) 女性犯罪의 年度別 趨勢

우리 나라에서 女性犯罪가 量的으로 每年 어떠한 樣相으로 增減하고 있는가를 10年間의 犯罪統計를 통하여 分析해 보기로 하겠다. 이 增減事實을 밝히려면 어떤 年度의 犯罪數量을 基準指數 100으로 하여 各 年度의 犯罪數에 대한 指數(index)로 各各 換算해야 한다. 〈表 1〉은 最近 10年間에 걸친 年度別 總 男女人口分布와 指數 그리고 年度別로 檢擧된 總 犯罪者 가운데서 女性犯罪者가 차지하고 있는 人員數와 增加指數 및 그 構成比率을 나타낸 것이다.

1971年度를 基準年度로 하여 男性犯罪와 女性犯罪의 各 年度別 數值를 指數로 計算한 結果, 女性犯罪는 1971年度를 指數 100으로 하였을 때 每年 平均指數가 11.7%씩 增加하여 1980年度에는 그 指數가 201.9로 增加하였다. 同期間 중 男性犯罪는 每年 平均指數가 13.7%씩 增加하여 女性犯罪의 增加率 보다 2%가 더 높은 223.5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總 女性人口 平均 增加率이 2%內外에 不過한 것에 比하면 女性犯罪는 매우 빠른 速度로

nce within a city) ⑥ 時間(time) ⑦ 家庭의 結合度(the degree of intergration in the family)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Criminology*, 9th ed., (New York: J.B. Lippincott Co., 1974), pp.127~129.

人 口 指 數		犯 罪 者 指 數		總犯罪者에 대한 女性犯罪者의比 率	女性人口 1000名當女 性犯罪者數
男 性	女 性	男 性	女 性		
100*	100*	100*	100*	11.8	2.5
102.3	101.8	128.2	133.9	12.3	3.3
104.0	103.8	113.8	123.6	12.7	3.0
105.1	103.9	105.9	105.7	11.2	2.5
109.1	107.6	133.3	126.2	11.2	2.9
110.3	110.5	192.4	169.3	10.5	3.8
112.4	112.7	199.2	162.8	9.9	3.6
114.2	114.7	187.5	151.0	9.7	3.3
116.5	116.9	206.6	156.5	9.2	3.4
117.3	116.7	223.5	201.9	12.1	4.3

增加하고 있음을 證明하는 것이다.

女性犯罪의 增減趨勢를 좀더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는 各年度의 女性人口 1,000名當 女性犯罪者의 數를 各各 換算해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表 1> 右端에 그 結果가 나타나고 있다. 女性人口 1,000名當 女性犯罪者는 1971年度에는 2.5名(男性犯罪者는 18.9名)이었던 것이 1980年度에는 4.3名(男性犯罪者는 35.8名)으로 基準年度 보다 1.8名이 增加하였다. 1971年度에 女性人口 1,000名當 女性犯罪者가 2.5名이었을 때는 400名當 1名이 犯罪者로 檢舉되고 있는 것이며, 1980年度에 1,000名當 4.3名이었다는 것은 女性人口 223名當 1名이 犯罪者로 檢舉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2. 女性犯罪의 質的 傾向

1) 女性犯罪의 罪種別 變化樣相

우리 나라 女性犯罪가 犯罪種類에 있어서 어떻게 構成되었는가를 分析함으로써 質的 變化樣相을 把握할 수가 있다.

먼저 犯罪를 刑法犯과 特別法犯으로 大分하여 檢討해 보면, <表 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71年度에서 부터 1976年까지는 特別犯이 刑法犯보다 約 2% 程度가 上廻하고 있었으나 1977년부터는 오히려 刑法犯이 더 높은 比率을 차지하여 1980년에는 54.6 : 45.4의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表 2〉 年度別 女性犯罪 檢舉人員 및 指數

罪 種 別			年 度		1971	1972	1973	
			人 員 數	指 數				
總 計			人 員 數	指 數	40,147	53,758	49,631	
			人 指	員 數	100	133.9	123.6	
刑 法 犯	刑 法 犯 計		人 員 數	指 數	19,145	24,623	24,533	
			人 指	員 數	100	128.6	128.1	
	財 產 犯	小 計	盜 竊	人 員 數	指 數	9,773	13,572	12,900
				人 指	員 數	100	138.9	132.0
			竊 盜	人 員 數	指 數	4,193	5,624	5,430
				人 指	員 數	100	134.1	129.5
			贓 物	人 員 數	指 數	1,734	2,385	2,172
		人 指	員 數	100	137.5	125.3		
	犯	詐 欺	欺 詐	人 員 數	指 數	2,554	3,579	3,455
				人 指	員 數	100	140.1	135.3
			橫 領 · 背 任	人 員 數	指 數	1,292	1,984	1,843
		人 指	員 數	100	153.6	142.6		
	法 犯	強 力 犯	小 計	人 員 數	指 數	3,434	3,520	3,642
				人 指	員 數	100	102.5	106.1
		犯	殺 害	殺 人	人 員 數	指 數	82	94
				人 指	員 數	100	114.6	101.2
強 盜				人 員 數	指 數	38	12	13
				人 指	員 數	100	31.6	34.2
暴 行				人 員 數	指 數	1,919	1,952	1,969
				人 指	員 數	100	101.8	102.6
犯	傷 害	傷 害	人 員 數	指 數	1,292	1,325	1,439	
			人 指	員 數	100	102.6	111.4	
犯	其 他 刑 法 犯	脅 迫 · 恐 喝	人 員 數	指 數	103	137	138	
			人 指	員 數	100	133.0	134.0	
		業 務 上 死 傷 過 失 致 死	人 員 數	指 數	9,241	1,141	1,203	
			人 指	員 數	100	123.5	130.2	
		姦 通	人 員 數	指 數	1,122	1,370	1,416	
			人 指	員 數	100	122.1	126.2	
		賭 博 斗 福 票	人 員 數	指 數	343	567	729	
	人 指	員 數	100	165.3	212.5			
犯	其 他 刑 法 犯	名 譽	人 員 數	指 數	667	881	991	
			人 指	員 數	100	132.1	148.6	
		落 胎	人 員 數	指 數	30	30	24	
			人 指	員 數	100	100.0	80.0	
		其 他	人 員 數	指 數	2,852	3,542	3,628	
			人 指	員 數	100	124.2	127.0	
特 別 法 犯	特 別 法 犯 計	特 別 法 犯 計	人 員 數	指 數	21,002	29,135	25,098	
			人 指	員 數	100	138.7	119.5	
		食 品 衛 生 法	人 員 數	指 數	3,273	7,107	6,437	
			人 指	員 數	100	217.1	196.7	
		租 稅 犯 處 罰 法	人 員 數	指 數	2,987	2,747	1,497	
			人 指	員 數	100	92.0	50.1	
		偷 竊 行 爲 等 防 止 法	人 員 數	指 數	269	602	490	
	人 指	員 數	100	223.8	182.2			
犯	暴 力 行 爲 等 處 罰 法 律	暴 力 行 爲 等 處 罰 法 律	人 員 數	指 數	9,937	12,643	11,426	
			人 指	員 數	100	127.0	115.0	
		其 他	人 員 數	指 數	4,536	6,056	5,248	
	人 指	員 數	100	133.5	115.7			

資料：大檢察廳，犯罪分析，1971 ~ 1981 (通卷第 39 號 ~ 第 78 號)。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42,441	50,677	68,006	65,348	60,617	62,847	81,059
105.7	126.2	169.4	162.8	151.0	156.5	202.0
21,358	25,827	33,056	33,061	31,587	31,915	44,285
111.6	134.9	172.7	172.7	165.0	166.7	231.3
11,272	13,570	17,838	16,342	15,064	14,978	24,722
115.3	138.9	182.5	167.2	154.1	153.3	253.0
4,735	5,456	7,409	7,009	5,857	5,036	6,268
112.9	130.1	176.7	167.2	139.7	120.1	149.5
2,066	2,387	2,808	1,761	1,541	1,115	1,303
119.1	137.7	161.9	101.2	88.9	64.3	75.1
2,902	3,661	5,114	5,128	5,108	6,057	12,209
136.6	143.3	200.2	200.8	200.0	237.2	478.0
1,570	2,066	2,507	2,444	2,558	2,770	4,942
121.5	159.9	194.0	189.2	198.0	214.4	382.5
3,204	3,712	4,315	4,507	4,292	4,144	4,723
93.3	108.1	125.7	131.2	125.0	120.7	137.5
71	72	120	108	97	96	118
86.6	87.8	146.3	131.7	118.3	117.1	143.9
23	37	43	24	21	29	44
60.5	97.4	113.2	63.2	55.3	176.3	115.8
1,614	1,858	1,969	2,056	1,786	1,653	1,736
84.1	96.8	102.6	107.1	93.1	86.1	90.5
1,355	1,635	1,957	2,133	2,261	2,237	2,649
104.9	126.5	151.5	165.1	175	173.1	205.0
141	110	226	186	127	129	176
137.0	106.8	219.4	180.6	123.3	125.2	170.9
859	1,125	1,444	2,221	2,593	2,266	2,499
93.0	121.8	118.0	240.3	280.6	245.2	270.5
1,323	1,917	2,480	2,853	2,903	3,659	4,511
117.9	170.9	221.0	254.3	258.7	326.1	402.0
773	921	1,674	1,911	1,924	2,318	2,330
225.3	268.5	488.0	557.1	560.9	675.8	679.3
963	1,095	1,150	1,240	1,157	1,300	1,292
144.4	164.2	172.4	185.9	173.5	194.9	193.7
16	22	24	11	20	10	21
53.3	73.3	80.0	36.7	66.7	33.3	70.0
2,944	3,465	4,131	3,976	3,634	3,240	4,187
103.2	121.5	144.8	139.4	127.4	113.6	146.8
21,083	24,850	34,950	32,287	29,030	30,572	36,774
100.4	118.3	166.4	153.7	138.2	145.6	175.1
4,644	3,812	7,561	6,678	6,138	6,537	11,621
141.9	116.5	231.0	204.0	187.5	199.7	355.1
1,276	1,398	1,015	664	628	278	126
42.7	43.5	34.0	22.2	21.0	9.3	4.2
467	681	1,209	986	760	763	801
173.6	253.2	449.4	366.5	282.5	283.6	297.8
10,739	13,325	15,613	15,053	13,049	12,666	13,564
108.1	134.1	157.1	151.5	131.3	127.5	136.5
3,957	5,634	9,552	8,906	8,455	10,328	10,656
87.2	124.2	210.6	196.3	186.4	227.7	234.9

刑法犯과 特別法犯을 罪質別로 細分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刑法犯

刑法犯을 財産犯과 強力犯으로 區分하여 分析해 보면, 基準年度인 1971年을 100으로 하였을 때 全刑法犯 指數는 9年이 지난 1980年에는 231.3으로 131.3%가 增加하였다. 그런데 財産犯은 253.0의 增加指數를 나타내어서 무려 153.0%가 增加하여 全刑法犯의 增加率보다 21.7%가 더 높은 上昇率을 보이고 있다. 이에 反하여 強力犯은 全刑法犯의 增加指數보다 현저히 낮은 37.5%만이 增加한 137.5에 止하고 있는 실정이다.

各 罪種別 그 指數變化 樣相을 細分하여 보면, 財産犯인 경우는 詐欺, 橫領·背任 등이 各 478.0, 382.5로 急激한 上昇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竊盜는 49.5%가 增加한 149.5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贓物은 1978年부터 下降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詐欺, 橫領·背任 등이 急上昇하고 있는 것은 女性犯罪도 男性犯罪 못지 않게 점차 知能化하고 있다는 一般의 常識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竊盜犯이 小康狀態를 보이고 있는 것은 竊盜犯이 主로 經濟的인 貧困에서 저질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庶民生活이 向上하여 生活水準이 높아진 데 그 原因이 있다 하겠다.

強力犯인 경우는 傷害만이 그 指數가 205.0로 增加하였을 뿐이고 그 以外の 犯罪는 緩慢하게 增加하는 정도이다. 그 理由는 女性的 體質이 柔弱하고 受動的인 態度 被保護的인 地位로 因하여 비교적 平穩한 手段에 依해 犯行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 推定된다.

其他 刑法犯인 경우는 賭博·福票犯이 全女性犯罪 중에서 가장 높은 679.3로 579.3%가 增加하고 있으며 姦通과 業務上過失致死傷도 各 402.0, 270.5로 增加하고 있다. 賭博·福票犯이 急激한 上昇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늘날 有閑女性들의 慾求에 副應하는 餘暇善用 施設이 不足으로 因하여 餘暇를 賭博과 福票로서 消日하는데 있고 이에 관련하여 女性社會에도 射倖風潮가 蔓延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家庭婦人이나 一般 未婚女性들이 不倫한 情事로 女性的 犯罪에서 姦通이 上昇되고 있는 것은 絶對的인 價値로 信奉되어 왔던 女性的 情操가 相對的인 價値로 感覺된 性倫理의 墮落에 基因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業務上過失致死傷이 徐徐히 增加하고 있는 것은 女性的 現저한 產業的 社會進出에 따른 操業業務를 分擔하는 女性人口 增加와 各種 車輛의 運轉業務에 就業하는 女性들이 늘어가는 데 따른 結果라 할 수 있다.⁸⁾

b. 特別法犯

特別法犯은 全女性犯罪의 增加指數 202.0보다는 26.9가 낮기는 하나 特定の 犯罪에 있어서는 상당한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는 데 그 代表的인 것이 食品衛生法(355.1)과 倫落行爲等 防止法 違反犯이다. 食品衛生法 違反犯이 上昇하고 있는 理由는 國民保健의 大量管理를 위

8) 劉鍾漢, “女性犯罪의 現況과 그 對策”, 大檢察廳, 犯罪分析(1967), p.252.

한 所屬當局의 衛生監察과 團束이 徹底해지고 各種의 規制가 新設 또는 強化되어 가는 데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各種 業態가 붙어나고 또한 細分되어 가는 점과 競爭도 熾烈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2) 男性犯罪와의 比較

全女性犯罪에 있어서 男性犯罪과 比較하여 女性이 많이 犯하는 犯罪을 高率順으로 나타내면 倫落行爲等防止法(63.8%), 食品衛生法(61.4%), 落胎(52.5%), 姦通(46.6%), 名譽(44.5%), 未成年者保護法(42.5%) 등의 順序로 되어 있다.⁹⁾

한편 女性이 별로 관여하지 않는 犯罪을 보면, 刑法犯인 경우는 強姦(1.0%), 公務員의 職務遺棄(1.1%), 強盜(1.3%), 收賂罪(1.6%) 등의 順이다. 特別法犯인 경우는 民防衛基本法(0.3%), 兵役法(0.4%), 特定犯罪加重處罰法(2.2%), 銃包火藥類團束法(1.8%) 등이다.¹⁰⁾

Ⅲ. 女性犯罪의 原因과 社會的 背景

1. 女性犯罪의 原因

犯罪의 原因을 정확히 糾明한다는 것은 效果的 犯罪의 豫防과 鎮壓對策을 위한 前提가 되므로 刑事政策上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그런데 犯罪의 原因論의 數는 너무나 多樣하여 무엇이 犯罪的 行動을 일으키며 무엇이 그것을 刺戟시켜 行動化 시키느냐 하는 것을 劃一的으로 解明하기란 그리 간단한 問題는 아니다.

一般的으로 犯罪原因論의 理論的 構成面에서 불매 犯行을 저지르게 되는 原因에 대하여는 從來부터 個人的인 素質을 重視하는 素質說과 社會的인 環境을 重視하는 環境說이 對立되어 오고 있다. 個人的 特性 내지 素質을 重視하는 立場에서는 犯罪者가 그 몸에서 지니고 있는 遺傳的 早期後天的, 身體的, 精神的 素因과 이들로부터의 缺陷이나 偏向等 病的 내지 病理性과 關聯시켜서 犯罪의 原因을 糾明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環境說을 重視하는 立場에서는 犯罪人을 圍繞하고 있는 自然的, 家庭的, 社會的, 經濟的, 教育文化的 諸環境 등과 關聯시켜 犯罪의 原因을 糾明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犯罪는 本來 各個個人이 갖는 特殊한 生理的 生物學的 條件과 그들을 둘러싼 成長環境 및 行爲環境의 複合的 相互作用하는 가운데 發生하는 것이기 때문에 犯罪의 原因을 糾明하는 方法으로서 一元的으로 素質 또는 環境의 어느 一方에만 局限시켜 理解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素質과 環境은 서로 排斥되는 것이 아니고 相互密接한 不可分의 關係下

9)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 (通卷 第75號~第78號).

10)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 (通卷 第75號~第78號).

에人間에게作用하여行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素質은環境으로 인하여支配되고 또環境은素質로 인하여變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罪質의種類와程度에 따라內的素質(個性)과外的事情(環境)의 영향중 그 어느 것이一層 크거나一層 적거나問題가 있을 따름이다.¹¹⁾ 그러므로犯罪의原因을糾明하는 데 있어서는素質과環境을分離하여 어느一方에偏重하여一元的으로考察할 것이 아니라多元的인面에서 이를分析檢討할 것이必要하다.

그러나本稿에서는犯罪의原因的糾明方法을 하나의統計的形式에 의한原因的分類에 따라集計된統計를 가지고서考察하려고 한다. 卽犯罪統計上에 나타난結果를土臺로 하여女性犯罪者들이犯罪行爲自體를誘發하게 된直接的인動機(motive)가 된諸要因을年度別로檢討하고罪種別狀況을分析하는 데限定시켰다.

<表3>에서 살펴 보면原因事由 중最高의比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其他를除外하고는每年利慾이 가장 높은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偶然, 怨恨憤怒의順이다.¹²⁾ 犯行動機의年度別推移를 보면利慾과怨恨憤怒는해마다 그比率이減少하는反하여其他는每年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利慾이減少하는理由は全國民의經濟的條件이 점차적으로好轉됨에 따라生活苦에서 벗어나는窃盜罪와 같은財産犯罪가 줄어들고 있는證據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怨恨憤怒가減少하고 있는 것은一般女性の教育程度가 높아짐에 따라怨恨 내지憤怒를 다른形態로昇華시켜解消시킨結果라解釋할 수 있겠다.¹³⁾

<表 3> 年度別 女性犯罪 原因

区分 年度	計	利 慾	射倖心	怨 恨 憤 怒	家 庭 不 和	誘 惑	偶 然	麻 藥 覺 醒 劑 中 毒	醉 中	其 他
1971	40,123 100*	14,344 37.8	228 0.6	5,138 12.8	437 1.1	52 0.1	1,526 3.8	8 0.02	80 0.2	18,310 45.6
1975	50,677 100*	11,349 22.4	560 1.1	4,666 9.2	612 1.2	472 0.9	4,232 8.4	40 0.1	544 1.1	28,202 55.7
1979	62,847 100*	9,596 15.3	1,018 1.6	2,760 4.4	638 1.0	630 1.0	5,499 8.7	8 0.01	577 0.9	42,121 67.0
1980	81,059 100*	13,639 16.8	1,330 1.6	3,109 3.8	686 0.8	790 1.0	5,640 7.0	18 0.02	656 0.8	55,191 68.1

*는 백분율임 (%)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1981 (通卷第39~第78號).

- 11) 鄭榮錫, 刑事政策, 修訂版 (서울: 法文社, 1978), p.66.
- 12) 1980年度 男性犯罪의 경우는 偶然이 13.6%로 最高率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11.3%를 차지한 利慾이다.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 (通卷 第75號~第78號) 參照.
- 13) 申硯均, "韓國女性犯罪에 관한 社會學的 考察",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5), p.27.

罪種別 原因을 分析해 보면 <表 4>와 같다. 刑法犯 중 財産犯罪은 18.9%가 利慾을 動機로 犯行을 저지르고 있는 데 그 중에서도 生活費充當이 14.1%를 차지하고 있다. 特別法 犯인 경우도 生活費充當이 22.5%로 가장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어서 現在까지도 經濟的 貧困 내지 慾求가 女性犯罪의 커다란 原因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勿論 지난 數年 동안 一般的인 國民所得水準은 많이 向上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富의 偏重現象으로 인한 低所得層의 生活苦의 解決은 아직도 遼遠한 課題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適法한 手段으로 生計를 維持하기 困難한 處地에 있는 女性들이 손쉬운 方法으로 生活費를 充當하기 위해서 犯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하겠다.¹⁴⁾

強力犯罪에 있어서는 犯罪의 性質로 보아서 怨恨憤怒가 15.2%로 가장 높고 偶發的 原因에 基因하는 경우가 9.8%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犯罪은 感情이 銳敏하고 亢進狀態의 憤怒를 抑制하는 自制力이 弱한 女性의 生物學的인 特性과¹⁵⁾ 관련된 것으로 些少한 侮辱과 冷待를 당하거나 나아가서 周圍環境의 影響을 적절히 統制하지 못한데서 그 原因을 이루게 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射倖心을 原因으로 하는 犯罪은 風俗犯罪가 단연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데, 特히 賭博과 福票犯에 集中하고 있다.¹⁶⁾ 이같은 사실은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女性들이 虛榮心과 奢侈的 感情을 充足키 위한 貪慾 및 射倖風潮가 蔓延되는 데서 오는 結果라 생각된다.

2. 女性犯罪의 社會的 背景

1) 女性犯罪者와 生活環境

犯罪의 間接原因이 되는 生活環境은 매우 廣範圍한 뜻을 內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大檢察廳에서 集計된 犯罪人의 生活程度와 家族關係만을 檢討하여 그러한 사실이 犯罪과 어떠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分析하고자 한다.

a. 女性犯罪者의 生活程度

Sutherland 와 Cressey 가 犯罪은 經濟的으로 上層階級에 속하는 사람들 보다 下層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集中하는 傾向이 있다고 指摘하였듯이¹⁷⁾ 犯罪者들에 관한 統計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중의 하나는 그들의 大多數가 貧困階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的 貧困은 現代社會의 犯罪現象을 明白히 밝혀주는 것이 못되더라도 直接·間接으로 犯

14) 金永泰, 前揭論文, p.386.

15) 劉鍾漢, 前揭論文, p.256.

16) 全刑法犯중 射倖心을 原因으로 하여 犯行을 저지른 女性犯罪者는 1,223名인데 이중에 賭博과 福票犯의 比率(753名)은 61.6%이다.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 (通卷第75號~第78號) 參照.

17)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op. cit., p.219.

〈表 4〉 罪種別 女性犯罪原因

區分 罪種別	計	利 慾			射 倖 心	
		小 計	生活費充當	遊興費充當 虛榮奢侈心		
刑 法 犯	44,285 100*	5,294 12.0	3,903 8.8	679 1.5	712 1.6	1,223 2.8
財 產 犯 罪	25,056 100*	4,731 18.9	3,527 14.1	614 2.5	590 2.3	402 1.6
強 力 犯 罪	4,963 100*	72 1.5	60 1.2	8 0.2	4 0.1	30 0.6
偽 造 犯 罪	893 100*	76 8.5	59 6.6	— —	7 0.9	4 0.4
公 務 員 犯 罪	60 100*	2 3.3	2 3.3	— —	— —	— —
風 俗 犯 罪	6,931 100*	278 4.0	119 1.7	53 0.8	106 1.5	778 11.2
遺 失 犯 罪	3,205 100*	46 1.4	43 1.3	2 0.1	1 —	— —
其 他 刑 法 犯 罪	3,177 100*	89 2.8	83 2.6	2 0.1	4 0.1	9 0.3
特 別 法 犯	36,774 100*	8,345 22.7	8,265 22.5	50 0.1	30 0.1	107 0.3

*는 百分率임 (%)

資料 :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 ~ 1981 (通卷第 75 ~ 第 78 號)

罪와 密接한 關聯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表 5〉에 나타난바와 같이 生活水準에서 下流에 속한 女性犯罪者는 年平均 90.4%를 차지하고 있어서 經濟的 貧困이 重要한 動機가 되어 犯罪發生을 刺戟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排除될 수가 없다. 그러나 同一한 貧困狀態下에서도 犯罪를 犯하지 않고 正當한 社會生活를 營爲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과 이와는 달리 家庭生活의 豊裕한 女性들이 享樂慾과 貪慾에 結合하여 犯罪의 危險이 發生하는 경우도 (詐欺, 橫領·背任, 姦通, 賭博과 福票 등) 看過해서는 안된다.

b. 女性犯罪者의 家族關係

〈表 6〉은 女性犯罪者의 婚姻與否와 子女有無를 集計한 것이다. 〈表 6〉에 依하면 配偶가 있는 女性이 年平均 69.6%를 차지하고 있고, 未婚은 20.9%, 死別은 6.2% 그리고

怨恨憤怒	家庭不和	誘 惑	偶 然	麻藥覺醒劑 中 毒	醉 中	其 他
1,111	380	742	3,249	4	192	32,090
2.5	0.9	1.7	7.3	—	0.4	72.5
107	47	153	1,324	3	56	18,233
0.4	0.2	0.6	5.3	—	0.2	72.8
754	168	19	488	—	96	3,336
15.2	3.4	0.4	9.8	—	1.9	67.2
1	4	22	31	—	—	755
0.1	0.4	2.5	3.5	—	—	84.5
—	—	—	4	—	—	54
—	—	—	6.7	—	—	90.0
—	119	530	405	—	13	4,806
—	1.7	7.6	5.8	—	0.2	69.3
14	3	6	797	1	14	2,324
0.4	0.1	0.2	24.9	—	0.4	72.5
233	39	12	200	—	13	2,582
7.3	1.2	0.4	6.3	—	0.4	81.3
1,998	306	48	2,391	14	464	23,021
0.8	0.8	0.1	6.5	—	1.3	62.6

〈表 5〉 女性犯罪者의 生活程度

生活 程度 年度	計		下		中		下		未 詳	
	人員數	百分率	人員數	百分率	人員數	百分率	人員數	百分率	人員數	百分率
1971	40,132	100	35,797	89.2	3,076	7.7	192	0.5	1,067	2.7
1975	50,677	100	46,703	92.2	3,690	7.3	284	0.6	—	—
1979	62,847	100	56,463	89.9	5,931	9.4	453	0.7	—	—
1980	81,059	100	73,105	90.2	7,523	9.3	431	0.5	—	—

資料：大檢察廳，犯罪分析，1971～1981（通卷第 39～第 78 號）。

〈表6〉 女性犯罪者の 家族關係

区 分 年 度	計	有 配 偶 者		
		小 計	子 女 有	子 女 無
1971	40,132	28,474	27,502	972
	100*	71.0	68.5	2.4
1975	50,677	34,324	32,848	1,476
	100*	67.7	64.8	2.9
1979	62,847	43,040	41,296	1,744
	100*	68.5	65.7	2.8
1980	81,059	57,502	55,342	2,160
	100*	70.9	68.3	2.6

*는 百分率임 (%)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 ~ 1981 (通卷第 39 ~ 第 78 號).

離婚은 3.3%에 不過하다. 18) 또한 有配偶者 中에서도 子女를 가진 경우가 大部分(96.1%)을 차지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配偶者가 없는 경우도 同一한 現象을 띠고 있다.

有配偶者의 女性에서 犯罪發生率이 높은 것은 婚姻에 의하여 主婦들의 經濟的 心理的 負擔이 무거워지고 나아가서는 社會와의 接觸面이 넓어짐에 따라 아무래도 社會的 摩擦이 많아지게 되어서 犯法行爲의 範圍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子女를 가진 女性들에게 犯罪率이 높은 것은 그들이 子女의 養育費나 學費의 調達로 經濟的 負擔이 한층 더 무거워져서 生活苦를 解決하기 위하여 稼動戰線에 휘몰리게 되어 社會的 接觸이 擴大됨으로써 犯罪를 誘發하는 作用 내지 機會가 많아진 結果라 생각된다.

2) 女性犯罪者の 教育程度

學校教育이 犯罪性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犯罪抑制的 作用을 한다는 見解와 犯罪促進的 作用을 한다는 見解의 對立이 있으나 一般的으로 前者가 支持를 받고 있다. 教育은 知育, 德育, 體育의 이른바 三育을 本質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効果는 人格形成과 行動의 動機에 크게 反映이 된다. 따라서 學校教育은 犯罪의 形態와 犯罪의 豫防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表7〉에서 1980年度 女性犯罪者들의 教育程度를 보면 國民學校程度의 教育을 받았거나 또는 전혀 받지 못한 者가 全體의 59.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順으로 教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犯罪率이 낮아지고 있다.

- 18) 美國의 경우는 年令에 따라 多少 차이가 있기는 하나 離婚한 女性이 가장 높은 犯罪率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配偶者가 있는 女性으로 나타나고 있다.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op. cit., p.217 參照.

離 婚			死 別			未 婚
小 計	子女有	子女無	小 計	子女有	子女無	
869	565	304	1,919	1,691	228	8,870
2.2	1.4	0.8	4.8	4.2	0.6	22.1
1,700	1,215	485	3,463	3,017	446	11,190
3.4	1.4	1.0	6.8	6.0	0.8	22.1
2,136	1,490	646	3,950	3,468	482	13,721
3.4	2.4	1.0	6.3	5.5	0.8	
3,017	2,118	899	5,178	4,602	576	15,362
3.7	2.6	1.1	6.4	5.7	0.7	19.0

<表 7> 女性犯罪者의 教育程度分布

學 歷 年 度	計	不 就 學	國民學校					大 學 院	留 學	未 詳
			中 學 校	高 等 學 校	大 學 校					
1971	40,132	14,736	16,448	4,491	3,521	810	—	7	119	
	100*	36.7	41.0	11.2	8.8	2.0	—	0.02	0.3	
1975	50,677	14,036	21,782	7,149	6,066	1,288	3.2	6	318	
	100*	27.7	43.0	14.1	12.0	2.5	0.1	0.01	0.6	
1979	62,847	11,088	25,384	10,598	10,235	2,107	3.6	9	3,390	
	100*	17.6	40.4	16.9	16.3	3.4	0.1	0.01	5.4	
1980	81,059	13,121	35,054	13,845	13,482	2,514	51	3	2,989	
	100*	16.2	43.2	17.1	16.6	3.1	0.1	—	3.7	

*는 百分率임(%)

資料: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1981(通卷第39~第78號).

이같이 教育水準이 높은 “인테리”女性 階層에서 犯罪率이 낮은 것은 그들 大部分이 生活程度와 就業狀態가 良好할 뿐만 아니라 結婚을 하더라도 대개가 與件이 좋은 男子 配偶者를 만나 비교적 生活이 安定된 太太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教育을 받는 過程동안 自己自身을 自制할 수 있는 힘(Self-Control)과 良心을 習得하여 항상 理性的인 行動을 취함으로써 犯罪의 危險에서 救濟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教育水準이 낮은 階層은 本來부

〈表 8〉 女性犯罪者の職業別

職業別 年 度	計	勞 務 者	自 由 業	從 業 員	農 漁 業
1971	40,125 100*	1,658 4.1	1,194 3.0	3,772 9.4	3,685 9.2
1975	50,677 100*	1,454 2.9	1,842 3.6	4,500 8.9	3,743 7.4
1979	62,847 100*	1,890 3.0	2,352 3.7	5,024 8.0	3,074 5.9
1980	81,059 100*	1,904 2.3	2,753 3.4	5,790 7.1	2,982 3.7

*는 百分率임(%)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 ~ 1980 (通卷第 39 ~ 第 78 號).

더 生活도 넉넉치 못한 편이 많고 正常的인 就業을 하기가 힘들고 실령 就業을 하더라도 就業狀態도 不健全하여 대개가 各種 勞務者 從業員에 從事하거나 그 配偶者도 대개 그와 같은 立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女性은 自然히 犯罪行爲에 參加할 機會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教育을 받은 女性 중에서 해가 거듭됨에 따라 犯罪者가 增加一路를 걷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서, 學歷이 높다고 해서 犯罪性과의 關係에 반드시 먼 거리에 있다는 結論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現代의 教育制度가 犯罪抑制的 機能을 담당하는 面에서 크게 不振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3) 女性犯罪者の職業別

어느 個人이 一定한 職業에 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知識 學力 體力 등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나, 一旦 職業에 從事하게 되면 그 사람의 經濟水準, 家庭의 生活程度, 思考方式, 素質, 交友關係 등을 決定하게 되므로¹⁹⁾ 職業은 犯罪性과도 密接한 聯關性을 갖는다. 職業과 犯罪性과의 關係는 多元的이라 할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 物的水準이 높고 經濟的으로 安定된 職業에 從事하는 者의 犯罪率은 낮고 社會的 經濟的 地位가 낮은 不安定한 職業에 從事하는 者의 犯罪率은 높다. 그러므로 職業은 個人의 後天的 生活環境을 決定지우는 데 重大한 影響을 미치므로 그 職業의 種類에 따라 犯罪의 促進的 要因도 되고 抑制的 要因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職業의 選擇問題는 人間으로서 重要한 問題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19) 南興祐, 刑事政策 (서울: 博英社, 1980), p.189.

商工業	會社員	學生	運轉員	無職	其他
6,505	202	373	123	16,098	6,515
16.2	0.5	0.9	0.3	40.1	16.2
12,129	492	477	251	22,911	2,878
23.9	1.0	0.9	0.5	45.2	5.7
15,528	809	605	758	26,333	6,476
24.7	1.3	1.0	1.2	41.9	10.3
22,476	1,000	680	720	32,202	10,552
27.7	1.2	0.8	0.9	39.7	13.0

〈表8〉에 依하면 全體의 無職이 가장 높은 構成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商工業과 從業員 등의 順이다. 이를 1980年度의 全犯罪者 中 刑法犯과 特別法犯으로 大別하여 分析하여 보면 刑法犯인 경우는 無職이 5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商工業이 14.2%, 從業員은 7.1%인데 比하여 特別法犯에 있어서는 商工業이 44.3%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고 相對的으로 無職은 27.1%에 머물고 있다.²⁰⁾

無職이 가장 많은 理由는 本來부터 일정한 職業을 갖지 않는 絶대다수의 家庭主婦들의 犯罪가 포함되어 있고 實사 職業이 있는 경우라도 그 職種을 숨겨 無職으로 偽裝하기 때문이다. 또한 商工業²¹⁾ 特別히 商業에 從事했던 女性들 가운데 犯罪率이 높은 것은 都賣商을 除外한 女性들은 大部分이 下流階層에 속하고 있어서 零細한 資本으로 小賣와 行商 및 露店商을 行하는 가운데서 犯罪에 接할 機會가 아무래도 많아지기 때문이라 說明할 수 있다.

20)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 (通卷 第75號~第78號) 參照

21) 商工業에는 工業, 鑛業, 運輸業, 接客業, 典當業, 古物商, 其他 商業으로 分類되고 있다. 1980年度에 商工業을 職業으로 가졌던 女性犯罪者 22,476名 中 其他 商業이 16,338名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接客業이 5,580名(24.8%), 工業과 鑛業이 198名(0.9%), 古物商이 177名(0.8%), 運輸業이 143名(0.6%), 典當業이 32名(0.1%)이다. 여기에서 商工業 中에 其他 商業은 小賣商과 行商 및 露店商이 大部分이라고 보면 된다.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 (通卷 第75號~第78號).

4) 女性犯罪者の年齡

人間은 各 年齡期에 따라 그 身體生理條件과 精神心理狀態에 상당한 變化를 느끼게 되고 또한 社會的 生活條件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經驗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各 年齡層에 따라 犯罪性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 22) 이같은 사실을 勘案하여 볼 때 犯罪者의 年齡分布를 分析해 보는 것도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表9>를 보면 男性犯罪인 경우 最高犯罪年齡(The age of maximum Criminality)을 나타내는 것은 20~25歲이고 두번째는 26~30歲로서 20代가 全體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23) 그런데 女性犯罪은 33.9%의 比率를 차지한 30代를 頂點으로 하여 20代(27.9%) 40代(22.3%) 50代(8%)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代는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最高犯罪年齡은 모든 條件에서 同一한 것이 아니고 罪種, 性別, 場所, 時代에 따라 變하기 때문에 24) 劃一的으로 어느 年齡層만을 가지고서 犯罪率 및 犯罪와의 親近度를 測定할 수는 없다.

<表9> 女性犯罪者の 年齡別 分布

年齡別 年 度	計	19 歲 以 下	20 ~ 25 歲	26 ~ 30 歲	31 ~ 40 歲	41 ~ 50 歲	51 ~ 60 歲	60 歲 以 上
1971	40,132	3,495	5,110	5,249	12,480	9,268	3,414	1,159
	100*	8.7	12.7	13.1	31.1	23.1	8.5	2.9
1975	50,677	4,497	7,027	6,288	16,377	11,085	4,092	1,309
	100*	8.9	13.9	12.4	32.3	21.9	8.1	2.6
1979	62,847	4,601	9,282	8,799	20,482	13,530	4,858	1,295
	100*	7.3	14.8	14.0	32.6	21.5	7.7	2.1
1980	81,059	4,833	10,890	11,724	27,503	18,105	6,499	1,505
	100*	6.0	13.4	14.5	33.9	22.3	8.0	1.9
	671,102	83,129	158,635	134,216	176,142	81,623	29,358	9,001
	100*	12.4	23.6	20.0	26.3	12.2	4.4	1.3

*는 百分率임 (%)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1980 (通卷 第39~第78號).

- 22) 慎鎮揆, 刑事政策(I), - 犯罪의 現象과 原因分析編 - (서울: 法文社, 1974), pp.159~160.
- 23) 諸外國의 경우에는 全犯罪를 通하여 最高犯罪年齡은 思春期 또는 그 直前인 것 같다. 英國의 統計에 依하면 起訴可能한 犯罪에서 最高犯罪年齡은 14~17歲 美國은 15~20歲 스칸디나비아 諸國은 13~15歲로 나타나고 있다.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op. cit., pp.122~123.
- 24)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op. cit., pp.122~126.

우리 나라 女性犯罪者의 罪種別 狀況을 分析해 보면 竊盜는 20代가 34.8%, 10代가 30.4%이며, 詐欺는 30代가 37.4%, 40代가 27.3%, 20代가 23.6%, 橫領·背任은 30代가 37.0%, 40代가 28.8%, 20代가 20.0%, 暴行·傷害는 30代가 36.6%, 20代가 30.3%, 賭博과 福票는 30代가 40.3%, 40代가 30.6%, 姦通은 20代가 52.0%, 30代가 35.3%인데 10代도 3.4%를 차지하고 있다.²⁵⁾ 大部分의 犯罪類型에서 30代에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要因은 女性은 30代에 접어들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社會 및 經濟的 活動에 參與하게 되어 對人接觸이 繁雜하여지는 한편 生理的으로나 慾望에 있어서나 가장 갈등이 심한 時期임으로²⁶⁾ 自然的으로 犯罪성과 聯關을 갖게 된 것이라 하겠다.

5) 女性犯罪者의 前科狀況

女性犯罪者의 前科狀況을 <表 10>에서 男性의 그것과 比較해 보면, 그 比率은 씩 낮음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나 女性犯罪者 中 前科者 構成比率은 每年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女性犯罪者 中 前科比率이 가장 높은 罪種은 賭博과 福票로 그 構成比率은 23.0%이며 다음으로는 偷落行爲防止法 18.5%, 食品衛生法 18.2%, 不正手票團束法 17.6%, 誣告 17.2%, 關稅法 16.4%, 詐欺 12.4%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⁷⁾

女性犯罪者 中에 再犯率이 每年 上昇하고 있다는 것은 犯罪의 防止와 犯罪人 處遇에 있어 重大한 社會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再犯罪者 中에 刑執行終了者가 77.7%를 차지하고 있음은²⁸⁾ 그만큼 犯罪者에 대한 處分의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社會的 保護政策의 뒷받침이 現實的으로 缺如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6) 女性犯罪者의 處分結果

<表 10>에서 女性犯罪者의 處分結果를 보면, 계속해서 起訴率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80年度 女性犯罪者 81,059名 中에서 39,274名이 起訴됨으로써 48.5%만이 裁判을 받고 나머지는 少年部送致 및 不起訴處分을 받았다.²⁹⁾ 起訴 中에도 9.3%만이 求公判이고 39.2%는 求略式으로 處理되고 있다. 이것은 女性의 犯罪가 男性의 犯罪에 比하여 偶發的인 機會性 犯罪나 生計難으로 因한 犯行이 많았고 犯法行爲도 비교적 消極的인 形態를 취한데 대하여 略式裁判에 붙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5)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通卷 第75號~第78號).

26) 金永泰, 前掲論文, p.374.

27)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通卷 第75號~第78號).

28) 大檢察廳, 犯罪分析, 1980~1981(通卷 第75號~第78號) 參照.

29) 男性犯罪의 起訴率은 1971年度에 69.9%, 1975年度에 69.1%, 1979年度에 64.9% 그리고 1980年度에는 61.7%로 女性犯罪에 比해 起訴率은 상당히 높지만 起訴 增減率面에서는 每年 낮아지고 있다.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1981(通卷 第39號~第78號).

〈表 10〉 犯罪者 前科別

前科別 年度	全 犯 罪 者 前 科 別			男
	計	前 科 無	前 科 有	計
1971	340,364 100*	314,529 92.4	25,835 7.6	300,228 100*
1975	455,733 100*	378,267 83.0	77,466 17.0	405,052 100*
1979	687,078 100*	502,520 73.1	184,558 26.9	624,196 100*
1980	756,588 100*	558,015 73.8	198,573 26.2	675,512 100*

*는 百分率임 (%)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1981 (通卷第 39 號~第 78 號).

〈表 10〉 女性犯罪者 處分結果

区分 年度	計	起 訴				少年部送量
		小 計	求 公 判		求 略 式	
			拘 束	不 拘 束		
1971	40,125 100*	27,358 68.2	3,936 9.8	4,650 11.6	18,772 46.8	861 2.1
1975	50,677 100*	29,731 58.7	5,759 11.4	1,959 3.9	22,013 43.4	639 1.3
1979	62,847 100*	32,337 51.5	4,369 7.0	1,227 2.0	26,741 42.5	372 0.6
1980	81,059 100*	39,274 48.5	6,079 7.5	1,456 1.8	31,739 39.2	336 0.4

*는 百分率임 (%)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1971~1981 (通卷第 39 號~第 78 號).

한편 不起訴 處分에서 起訴猶豫가 1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輕微한 犯罪에 대하여는 女性의 경우 一般적으로 情狀이 많이 참작된 結果로 보아진다. 그 다음으로 無嫌疑 處分이 17.4%를 차지하고 있음은 民事上의 爭訟事件에 不遇한 事實을 刑事事件으로 告訴하는 등의 告訴權을 濫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³⁰⁾

30) 劉鍾源, 前掲論文, p.265.

性 犯 罪 者 前 科 別		女 性 犯 罪 者 前 科 別		
前 科 無	前 科 有	計	前 科 無	前 科 有
275,511	24,717	40,136	39,018	1,118
91.8	8.2	100*	97.2	2.8
330,834	74,218	50,681	47,433	3,248
81.7	18.3	100*	93.6	6.4
447,507	176,689	62,882	55,013	7,869
71.7	28.3	100*	87.5	12.5
486,874	188,638	81,076	71,141	9,935
72.1	27.9	100*	87.7	12.3

小 計	不 起 訴				
	起訴猶豫	起訴中止	嫌疑無	罪로안됨	公訴權無
11,906	2,724	1,094	6,660	181	1,247
29.7	6.8	2.7	16.0	0.5	
20,307	7,783	1,261	8,545	195	2,523
40.1	15.4	2.5	16.9	0.4	5.0
30,138	11,816	4,418	9,357	225	4,322
48.0	18.8	7.0	14.9	0.4	6.9
41,449	14,611	7,298	14,118	262	5,160
51.1	18.0	17.4	17.4	0.3	6.4

IV. 女性犯罪의 豫防과 事後對策

1. 女性犯罪의 豫防策

豫防이란 犯罪發生 및 犯罪者에로 成長을 未然에 防止하는 措置이다. 가령 現代醫學에 서도 豫防醫學(Preventive medicine)이라고 해서 疾病이 생기기 前에 생기지 않도록 事前 豫防에 主眼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刑事政策學에서도 마찬가지로 犯罪의 事前豫防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범죄의豫防이 刑事政策上 더 有利한 점은 첫째 犯罪가 이미 發生한 後에는 被害回復이 不可能한 경우가 많으며, 둘째 犯罪事件이 發生한 後 犯人의 檢擧와 矯正에 所要되는 費用과 人力의 浪費가 많고, 셋째 犯罪者들은 흔히 일단 犯罪者로 檢擧되고 處分 또는 處分을 받기 始作하고 부터는 矯正이 어렵거나 그 자신 更生이 극히 어려운 狀態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 犯罪事件이 發生한 後엔 수 많은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不快感을 느끼고 그로 因하여 人間關係를 損傷시키는 結果를 낳기 때문이다.³¹⁾ 그러므로 犯罪와 非行의 될 可能性의 臆 보이는 모든 條件을 除去하거나 減少시켜서 犯罪를 事전에 豫防하는 것이 最善의 上策이다.

그래서 以下에서는 女性犯罪의 原因과 動機를 誘發케 하는 諸般要因을 中心으로 하여 그 豫防策을 考察하려고 한다.

1) 家庭을 통한 豫防

家庭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는 社會的 環境이며 同時に 成長한 後에도 그 生活의 安住處로 機能하는 지극히 重要的 基本的 社會集團이다. 그러므로 家庭에 여러 가지 缺陷내지 障害가 있으면 家庭이 갖는 本來의 機能을 期待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人格形成과 個人의 反社會的 行爲에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 家庭이 個人의 犯罪性向에 미치는 影響에는 家庭의 構成度, 經濟的 狀態, 家族構成員間의 關係, 文化程度 等을 들 수 있다. 따라서 犯罪를 豫防하는 데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家庭을 強化시키는 Service Program 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보겠다. 대체로 家庭을 強化케 하는 方法으로는 貧困家庭에 대한 經濟扶助과 問題家庭에 대한 相談施設의 制度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a. 貧困家庭에 대한 經濟扶助

犯罪要因의 殆半이 經濟的 貧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이 統計上으로 明白한 바이다.³²⁾ 家庭의 經濟的 貧困狀態가 그 自體로서는 반드시 道義적으로 不良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貧困에 附隨해서 일어나는 間接的인 作用 卽, 貧困으로 인한 住宅難 이와 關聯하는 劣惡한 近隣關係, 家庭不和, 不就學 등으로 犯罪에 빠지는 경우도 無視할 수 없다.

따라서 犯罪豫防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경우 經濟的 安定을 위한 家族扶助를 先行하여 最少限度의 衣·食·住 問題를 解決해 주어야 한다. 生活保護法이나 兒童福利法을 통한 要求 保護 貧困한 家庭이나 子女들에 대한 적절한 保護施策 또는 家庭福祉 서어비스 등이 行해지면 犯罪를 豫防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經濟的 支援은 勿論 醫療支援, 就職斡旋, 教育機會의 提供 등을 퍼는 것도 그 方法의 하나가 될 것이다.

b. 問題家庭에 대한 相談施設의 制度化

31) 慎鏡揆, 刑事政策(II) - 犯罪의 豫防과 犯罪者의 矯正篇 - (서울: 法文社, 1976), pp. 10 ~ 11.

32) <表 4> 參照

各 家庭이 겪고 있는 代表的 家庭問題는 夫婦問題, 子女問題, 老人問題, 經濟問題 등으로 集約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問題가 있음으로 해서 家庭안의 분위기가 不睦的이고 不安定을 助成할 경우에는 家庭안이나 家庭밖에서 갖가지 逸脫行爲를 恣行하게 되는 것은 쉽게 豫想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勘案하여 家庭問題로 어려움을 겪는 女性들을 相談指導하는 施設이 制度的으로 運營될 것이 要望된다. 그 具體的 內容은 各 家庭의 經濟的, 家族關係, 情緒的, 身體的, 法律的(離婚·財產所有權에 대한 것 등) 問題를 비롯하여 現存하는 社會的 文化的 諸問題를 다룰 수 있는 相談機構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러한 問題들을 專門的으로 다룰 수 있는 專門家(精神醫學者·社會事業家·心理學者·法律家 등)가 무엇보다 確保되어야 한다.

2) 教育을 통한 豫防

a. 學校教育의 制度的 改善

傳統社會의 產物인 學校와 大學은 教科指導에만 치우친 나머지 生活指導 및 全人格의인 指導는 거의 外面한 實情에 있고 또한 大量教育으로 인하여 多樣化하는 現代社會의 教育的 要求에 적절히 副應하지 못하는 狀態에 있다. 특히 女性인 경우에는 教育機會는 勿論이고 教育內容이 傳統的 男性文化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直接 間接으로 男性優位의 性觀이 길러지고 있는바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女性들로서의 自負心과 矜持를 길러주고 女性의 價値觀을 심어주기 위하여는 教育機會, 教育內容, 學校의 風土 등에 과감한 改革이 있어야 한다.³³⁾

그 方法으로서는 女性의 全人的 發達을 無視한 盲目的인 知識一邊倒의 主知主義 教育에서 脫皮하여 人性·德性·知性·體力을 育成 啓發하여 올바른 態도와 創意 등을 갖춘 全人的 人間育成에 主力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女性들이 教育을 받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能力, 態度, 價値觀을 갖추어 원만한 學校生活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卒業後에도 家庭과 社會的으로 容認된 理想을 가져서 健全한 生活을 營爲하게 될 것이다.

b. 社會教育의 強化

社會教育은 形式的인 教育(正規 學校教育) 以外的 非形式的인 教育을 意味한다. 教育의 對象, 年齡, 場所, 時間, 教育內容 方法 등에 있어 어떠한 規定이나 制度를 벗어나 융통성 있게 運營되는 것으로 成人教育 혹은 平生教育을 포함한다. 社會教育은 特定한 知識이나 機能의 學習 以外에 價値觀, 態度, 道德의 行爲, 社會規範, 人間關係 등을 習得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³⁴⁾ 形式的인 教育 못지 않게 女性들의 社會化 過程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하겠다.

33) 金信一, "복지사회 여성교육의 방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1980.12 (通卷第117號), pp. 25 ~ 27.

34) 이혜성, "도전받는 여성교육",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1981.10 (通卷第180號), p.41.

一般的으로 成人 女性들은 오늘날 젊은이들 보다 더 貧弱한 教育을 받고 있으므로 成人이 된 後의 教育은 한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主婦로서 더 나아가 市民으로서 自我實現의 길을 찾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役割을 하리라 믿는다. 따라서 社會教育은 女性의 發展과 人間回復에 直結되는 必要不可缺한 要素이므로 社會教育은 반드시 強化되어야 한다. 卽, 女性의 發展을 위한 教育프로그램을 多樣하게 마련하여 「모두를 위한 教育」 「一生을 통한 教育」에 힘써야 할 것이다.

c. 職業技術 教育의 強化

女性들을 위한 技術教育 또는 職業訓練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 生業으로서의 就業을 希望하는 女性들이나 低所得層의 女性들에게 職業技術 教育을 實施하는 것은 비교적 女性的이고 安定된 職業을 갖게 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女性들의 逸脫行爲를 事前에 豫防하는 處方도 될 것이다. 特히 오늘날 家庭電氣製品의 普及으로 家事勞動이 輕減되어 家庭主婦도 餘暇가 생기게 되고 보다 풍족한 生活을 하고 싶어하는 理由로 副業과 再就職을 하려는 女性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즈음에 各界各層에 알맞는 技術教育의 擴大實施는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갖게 한다.

3) 地域社會와 國家를 통한 豫防

a. 母子家庭에 대한 保護

男便의 死別이나 離別로 因하여 家庭의 本來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母子家庭에 대하여는 特別한 福祉서비스가 講究되어야 하겠다. 母子家庭에 있어서 어머니의 경우는 一般的으로 性的 情緒的 不安定을 喪失하게 되며 世帶主로서의 責任負擔의 增加로 尙상 精神的으로 緊張狀態에 빠지기 쉬우며, 어머니로서의 役割은 家事, 子女養育의 二重負擔으로 힘겨움게 된다. 더욱이 經濟的으로 生活이 어려운 母子家庭의 경우는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 不安定한 狀態에 빠지게 되어 家族成員 各者가 家族內에서 충분히 각기 役割을 遂行하지 못하고 相互 갈등적인 家族生活로 緊張感을 誘發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就業함으로써 子女에 대한 養育監督이 不充分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教育에 대한 無關心이나 放任이 子女들 로 하여금 問題兒나 非行兒童이 되게 하는 要因이 될 수 있으므로 個人이나 社會에 많은 問題를 惹起케 할 可能性이 있다.³⁵⁾

따라서 母子家庭에 대하여는 母子가 스스로 家庭生活의 安定과 向上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施策이 要求되어 진다. 첫째 要保護 母子家口에 대하여는 生活

35) KDI와 保社部가 1974年度에 推計한 1981年度의 一般母子家口數는 73,000餘 家口이다. 또한 要保母子家口數 中 保護施設家口數는 8,800餘 家口로 나타나고 있다. 장인협, "모자복지사업의 전망과 그 정책방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1980.7 (通卷 第 166號) p.22 參照.

扶助와 抵利貸付制 實施 및 職業輔導 強化, 둘째 要保護施設收容 母子家口에 대하여는 母子院에 入所시켜 일정기간동안 社會適應能力과 自立基盤 確立을 위한 機會를 부여, 셋째 母子家庭에 대하여는 各種 相談과 아울러 生活指導나 生業指導를 行하는 關係施設의 設置, 넷째 지금까지의 母子福祉事業을 民間責任의 零細의인 서비스 內容에서 脫皮하여 政府支援의 과감한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³⁶⁾

b. 未婚母에 대한 保護

最近에 이르러 未婚母의 增加와 함께 그 樣相이 더욱 複雜해지고 있어 深刻한 社會問題로 抬頭되고 있다. 政府는 1975年以後 未婚母와 가장 관련이 깊은 棄兒와 海外入養 숫자를 公表하지 않고 있어서 그 精確한 增減現況을 把握할 수는 없지만 1974年에는 6,900名의 棄兒가 發生한 것으로 集計되었다. 1981年度에 國內 入養 숫자는 3,345名(保社部集計)인데 海外入養과 入養이 안된 숫자를 包含하면 적어도 9,000餘名이 棄兒가 發生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중 70%가 未婚母를 엄마로 둔 棄兒로 未婚母는 대충 6,300餘名 정도로 推算되고 있다.³⁷⁾ 이같은 未婚母 숫자는 入養機關이나 相談所를 찾아올 경우에 局限된 것이므로 入養機關이나 相談所를 찾지 않거나 찾지 못한 未婚母까지 包含시키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未婚母의 發生要因은 正常的인 家族體制의 破壞, 性에 대한 開放, 性知識과 性教育의 不足 및 性倫理觀의 缺如로 無防備의인 異性交際와 無責任·無計劃의인 妊娠에 있다 하겠다. 未婚母는 자신의 빚어낸 엄청난 結果로 現實的인 苦痛이 家族과 社會에 隱蔽된체 學業을 中斷하거나 또는 失職이나 經濟的 窮乏을 당하여 주위의 冷待와 비난의 눈초리를 의식하여 絶望感을 갖게 된다. 이렇게 疎外感과 自責感에 빠진 未婚母는 家出하여 彷徨하다 自殺을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여 倫落女性으로 轉落하기도 하며 窃盜 殺人 等 非行이나 더한 問題性을 誘發케 한다. 한편 그들의 아기는 그들이 養育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私生兒 또한 未婚夫 자체와 더불어 社會에 여러 問題를 惹起시킨다.³⁸⁾ 이러한 面에서 未婚母의 發生을 事전에 豫防하고 發生後에는 그에 따르는 적절한 福祉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아가는 것도 女性犯罪를 豫防하는 한 方法이 될 것이다.

未婚母의 發生을 防止하는 길은, 家庭은 勿論 政府 學校 民間團體에서는 일시적인 教育으로서가 아니라 長期的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性教育을 어려서부터 실시하여 性에 대해 올바로 理解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事後對策으로서는 그들의 傷處난 마음을 治療

36) 上揭論文, pp. 26 ~ 27.

37) 中央日報, 1981.8.13. p.5

38) 유상열, "10代 未婚母와 青少年問題",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 1979 가을호(동권 第62號), p.141, 張素英, "未婚母에 대한 對策과 方案",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峨山, 1980 春季號, pp.80~81.

할 수 있도록 하는 專門家の 相談을 통하여 精神的 現實的 安定을 갖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리고 産前後의 醫療서비스와 分娩惠澤, 宿食保護, 職業輔導 내지 歸家措置를 취할 것이며 結婚할 때까지 계속 相談過程을 가져 自我를 強化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그의 私生兒가 自立할 수 있게끔 하는 成人이 되기까지 社會의 적절한 保護가 있어야 하겠다.

c. 家出女性の 善導

여성들이 家庭을 무단으로 離脫하여 社會環境과 부딪칠 때에는 여러가지 社會問題를 낳게 한다. 家出의 動機는 求職, 家庭不和, 貧困, 放任 등 주로 家庭의인 問題와 虛榮心, 失戀, 都市憧憬 등에 의한 社會心理的 要因도 크게 作用하고 있다. 家出女性の 家出前 職業은 家事に 從事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學歷은 國民學校 以下에, 年齡은 20歲未滿에, 生活水準은 下層流에 集中하고 있다.³⁹⁾ 이렇게 막연히 家出한 女性은 대개 技術教育을 받지 않아 食母(家庭婦), 職工, 人夫 등의 單純勞動이나 서어비스業 販賣職에 從事하게 되거나 또는 年齡에 알맞지 않는 職業에 從事하는 것이 大部分이다. 이 경우에 그들의 慾求가 充足되지 못할 때 크게 挫折感을 갖고서 賣淫과 不良行爲의 소굴에 들어가 犯罪者로서 更生할 수 없는 環境에 빠지는 수가 많다. 한 調査에 의하면 女性犯罪者 중 22%가 家出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⁴⁰⁾ 이러한 深刻性에 비추어 볼 때 家出은 非行이나 犯罪의 前段階의인 行爲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家出은 그 自體 및 結果에 있어서 重要한 社會問題로 포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女性の 無斷家出을 막고 그들을 善導하기 위하여는 첫째 正常的인 家族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家庭을 強化 또는 再組織시켜 주도록 해야 하며, 둘째 地域社會環境의 淨化가 講究되어야 하고, 셋째 國家政策으로 義務教育의 擴大로 教育水準을 높이고 또한 技術教育과 職業輔導 등에 充實을 기할 것이 要請된다.

2. 女性犯罪의 事後對策

犯罪가 發生하기 以前에 豫防에 置重하여 犯罪를 未然에 防止하는 것이 가장 効率的인 것이지만, 기왕에 이루어진 犯罪에 대해서는 矯正處遇機關이나 施設에서 적절한 對策을 講究하여 可能的 限 빨리 健實한 社會人으로 教化·改善하여 家庭 學校 社會로 復歸시켜야 할 것이다. <表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女性犯罪者의 再犯率은 每年 增加하고 있으며 그것도 刑執行終了者가 77.7%를 차지하고 있음은 실질적으로 莫大한 國家費用으로 이룩된 矯正處遇機關이나 施設에서 이들에 대한 矯正處遇가 効率的으로 運營되지 못하고 無力했다는 證左

39) 金永謀, 韓國社會福祉論, (서울:經文社, 1978), pp.227~228, 韓國社會福祉協議會, 韓國社會福祉年鑑, 1972, p.96.

40) 申硯均, 前掲論文, pp.76~77.

로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受刑者의 矯正敎化를 目的으로 하는 矯正處遇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女性犯罪의 矯正處遇에 直接的으로 關與하고 있는 矯導所와 그들이 出所後 社會內에서의 自立·更生할 수 있도록 保護活動을 行使하는 更生保護會의 機能과 實態 등을 檢討하고 改善策을 講究하여 보기로 한다.

1) 矯導所의 內實化

現代的 意味의 矯導所는 應報刑의 行使로서 受刑者에게 害惡을 科하는 것이 아니라 國家刑罰의 行使로서 犯人의 自由를 抱束하고 同時에 犯人을 敎化改善 하는데 있다. 이러한 隔離와 敎化改善이란 作用을 지니고 있는 矯導所는 矯正公務員의 절대부족 矯正作用에 必要한 作業施設, 敎化設備 등의 未備 및 男女收容者를 같은 施設內에 分界收容을 하고 있는바, 受刑者의 拘禁이나 處遇의 여러 가지面에서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犯罪者들이 出所後 再次 犯行을 저지르지 않고 正常的인 社會生活을 營爲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는 劃期的인 改善策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分類處遇의 活性化

現代的 行刑制度上 受刑者의 個性을 多方面으로 分析하고 이를 基礎로 하여 그들을 몇가지 類型으로 分類한 위에 隔離의 科學化 處遇의 個別化를 行하는 것이 矯正處遇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受刑者를 分類함에는 受刑者 各人의 個性, 能力, 刑期, 犯數, 罪質, 敎育程度, 家族關係 및 犯罪原因 등을 科學的으로 診斷分析할 것이 必要하며 그 結果에 따라 處遇의 合理的인 個別化를 기하여야 한다. 이에는 心理學者·精神醫學者·社會學者·社會事業家·敎育學者 등 專門的 訓練을 거친 일단의 職員에 의해 行해진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는 分類處遇에 主任務를 專擔할 專門家 職員을 別반 確保하지 못한 實情이어서 受刑者處遇의 個別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具體的으로 各 受刑者의 處遇方法을 研究 決定하는 機構로서의 處遇研究所(Society for Treatment)를 設置하여 受刑者의 處遇를 위한 專門的 診斷과 專門的 處方 및 治療를 면밀히 遂行하고 있다.⁴¹⁾ 우리 나라도 受刑者의 科學的 分類와 個別的 處遇를 效率性 있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專門家 要員을 確保하고 美國의 處遇研究所 같은 機構를 設置하여 運營될 것이 必要하다.

b. 改善敎育의 強化

行刑의 目的이 受刑者들을 敎化·改善시켜 健全한 社會一員으로 復歸시키는 것이 明白한 以上 矯導所內에서의 改善敎育은 受刑者의 改過遷善이며 反社會性을 除去하여 社會適應 能力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受刑者들은 自由가 制限되고 一般社會로부터 隔離 拘禁이된 者로서

41) 權純永·許柱旭, 行刑學(서울:一潮閣, 1981), p.71.

大部分이 自身の 行爲에 대한 苛責을 받는 良心의 深度가 正常人과는 다른 健全한 情緒觀念의 形成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우선 올바른 生活觀과 尊法精神의 確立을 심어 주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矯正行政은 옳고 그릇됨에 따라서 信償必罰의 公正한 處遇로 受刑者의 惡習을 올바르게 矯正하여 所內生活의 秩序를 確立하고 責任과 義務를 誠實히 移行토록 하여 秩序를 無視하고 弛緩된 放縱生活에서 惹起된 受刑者들의 反社會的 意識構造와 生活慣習을 變改시켜야 할 것이다. 些少한 잘못도 默過함이 없이 嚴히 다스리고 習性화된 犯法生活을 根本的으로 矯正하여 法을 違反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皮膚로 느끼도록 하고 尊法精神으로 生活하는 데서 個人的 權利와 自由가 保障됨을 確信시켜야 한다. 또한 法은 個人的 行動을 制限하고 自由를 拘束함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保障하여 共同의 利益을 確實하게 하여 움이 緊要한 것임을 保障시켜 주어야 한다.⁴²⁾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倫理觀을 올바르게 심어 주어서 그들의 自省과 理解로서 새로운 價値觀을 定立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 職業訓練의 充實化

女性犯罪者의 大多數가 生活水準이 下流階層(90.4%)이고 無職者(30.5%)이므로 受刑者들이 在所中에 技能習得은 그들이 出所後의 就業 내지 장래 生計의 維持面을 考慮할 때 職業訓練은 매우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豫算不足으로 各 受刑者에 適合한 職業訓練을 시킬 矯導作業 諸般施設과 作業技術指導面 및 作業場數의 不足으로 全受刑者에게 矯導作業을 통한 職業訓練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勿論 1977年 9月부터 法務部에서는 從來의 名目만의 職業訓練의 領域을 벗어나 實効性 있는 職業訓練을 위해 實社會에 有用한 職種을 선택하여 社會 大企業體와의 紐帶로 訓練을 시켜 그들이 出所後에는 그 業體에 就業까지 保障케 하고 있으나 그것도 全受刑者에게 實族되는 것이 아니고 小數 受刑者에 局限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女子受刑者들에게는 이같은 惠澤마저도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高度의 產業社會 指向속에서 女子受刑者에게는 女性의 特性을 考慮하여 이에 부합하는 作業과 訓練을 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退所後의 實際生業과 직결되는 새로운 職種을 開發하고 質과 水準을 높이는 데 施設과 人力을 最大한 活用하여 철저한 一人一技의 技術教育을 強化하여 自立更生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한편 이들이 社會에 復歸할 때 一般社會에서는 따듯이 맞이하여 職業斡旋과 職業輔導에 적극 參與하여 다시금 再犯을 犯하는 경우가 없도록 社會啓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42) 申泰雨, "再犯防止와 矯正敎化", 治刑協會, 矯正, 1978.10. (통권 第30號) p.42.

2) 更生保護制度의 效率的인 運營

우리의 경우 日政時부터 各 地域單位로 更生保護團體가 있었으나, 1961年 更生保護法이 制定되면서 法務部 監督下의 法人體로 發足하게 되어 中央에 更生保護會가 成立되고 1981年 末 現在 서울·釜山 各道에 9個의 更生保護會支部를, 各 矯導所 및 拘置所의 所在地에 30個所의 支所가 設置되어 있다.

更生保護는 주로 犯罪者로 處罰되었던 者, 處罰의 猶豫된 者 등 法的拘禁施設로부터 釋放된 者에 대한 社會內에서의 矯正處遇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更生保護法에 의하면 更生保護라 함은 自由刑의 終了 또는 執行免除를 받은 者, 假釋放 중에 있는 者, 起訴猶豫, 宣告猶豫, 執行猶豫된 者 및 少年院에서 退院 또는 假退院 者에 대하여 善行을 장려하고 環境을 造成시켜 再犯을 防止하는 觀察保護와 親族緣故者들로부터 援助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自活을 위한 職業의 輔導, 就業의 알선, 收容保護, 歸住保護 등 이른바 直接保護를 規定하고 있다(更生保護法 第1條와 第3條). 그러나 更生保護 措置가 現行法上 「任意的 更生保護制度」(Voluntary after-Care) 만을 規定하여 實施하고 있을 뿐 「有權的 更生保護制度」(Compluory after-Care)는 規定하지 않아서 現在 施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更生保護事業은 소극적으로 運營되고 있는바 效率的인 再犯防止策이 되지 못하고 있다.

司法行刑矯正機關에서 일정한 拘禁狀態에 있다가 釋放된 者를 다시 再犯의 길을 밟지 않도록 社會의 再適應·自立·自治의 길을 造成시키려면, 첫째 國庫補助金의 增大를 통해서 現在 更生保護 收容施設을 더욱 擴充하고 事業內容의 充實化를 기하여 더 많은 出所者들이 尙期間 收容保護를 받으며 社會內適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이 事業에 從事하는 職員에 대한 專門의 教育訓練을 實施하여 效果的인 業務遂行을 위한 資質培養에 힘써야 하고 셋째, 有權的 更生保護制度를 全面的으로 導入하여 이것과 現行의 任意的 更生保護制度가 有機的으로 統合運營되게 함으로서 全出所者들의 社會適應能力을 더욱 指導 援助하게 할 것이 期待된다.⁴³⁾

V. 結 論

以上에서 犯罪統計를 利用하여 犯罪社會學的 見地에서 女性犯罪를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그 豫防策을 考察하여 보았다. 一般的으로 女性들은 男性보다 犯罪加擔率이 낮고 罪質도 單純한 面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女性犯罪는 量的으로 每年 急激히 增加하고 質的인 面도 점차 多樣性을 띠고 있어 「女性犯罪의 男性化」 傾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43) 慎鎮授, 刑事政策(II), pp.316~317.

이같은 現象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犯罪가 經濟的인 問題와 直接으로 結付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人間問題에 있어서 經濟만으로 解決하지 못하는 面도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原因을 精確히 糾明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은 아니다. 그 原因이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 社會에 女性犯罪가 增加하고 그 手段과 方法이 獨特한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家庭과 社會에 不安定性을 反映하는 것으로서 이는 女性만의 問題로 끝나지 않고 社會的 問題로 惡循環하게 된다.

犯罪로부터 家庭과 社會를 防衛하고 社會에서 犯罪를 防遏하는 길은 犯罪의 原因力을 없애는 것이 그 要諦가 되어 있으므로 從來와 같이 어떤 一時的 對應措置로서 刑事立法的인 女性 個個人에 대한 法律的 團束이나 處遇制度의 確立만으로는 그 實際的 效果를 거두기는 不充分하다. 거기에는 家庭 學校 社會를 통한 全體的인 協力體制가 이루어질 것이 必要하며 나아가 國家的인 政策面에서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家庭의 經濟的 貧困이라는 事情은 여러 가지 意味로 女性犯罪를 誘發하게 하는 動機로 되어 있으므로 生活能力이 없는 家庭에 대하여는 最少限도의 生活를 할수 있도록 經濟的 支援을 해 주어야 한다. 거기에다 要保護 母子家口에 관하여는 生活扶助와 施設保護 및 職業輔導를 強化하여 自立基盤 確立을 위한 機會를 부여하여 經濟的 負擔을 덜게 해줌으로서 貧困으로 發生하는 犯罪的 要因을 除去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리고 갖가지 家庭 問題로 어려움을 겪는 女性들을 위한 相談制度나 서어비스가 提供되어야 하겠다.

學校에서는 女性的 全人的 發達을 無視한 單目的인 知識一邊到의 主知主義教育을 지양하고 人格의 健全한 成長을 위한 全人的 教育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教育課程을 改編함으로써, 教育을 받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卒業後에도 女性들의 社會化 과정에서 自我確立과 自我實現의 길을 찾게 하는 것이 要望된다.

地域社會와 國家는 不良文化와 有害環境의 淨化 및 物量主義와 消費風潮를 一掃하여 健全한 社會風土를 助成해야 한다. 또한 低所得 勤勞女性, 未婚母, 倫落女性, 家出女性 등 要保護 女性들에 대한 社會全體의 保護와 政策的 뒷받침을 하여 女性犯罪의 原因의 계기를 이루는 여러 要素의 除去에 힘쓰도록 해야 하겠다.

行刑·矯正段階에서는 受刑者에 대한 矯正教育을 보다 徹底히 실시하여 올바른 生活觀과 遵法精神을 심어 주어서 그들의 反社會的 意識構造와 生活慣習을 除去하여 健實한 社會人으로서 復歸시키는데 注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更生保護의 制度를 大幅 發展시켜 再犯生活에 빠질 機會를 最大限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 Summary –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evention of the Crimes by Korean Women

Soo-gil Kim

Today the increasing changes of social phenomena make complex and various the way of life in general and also make the survival even more violent. With this the special aspects of the crimes committed by Korean women are brought to light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us this study aims at the following two: first, it has analyzed the general tendency of the crimes by Korean women with "The Analysis of Crimes" (Bum Je Bun Suk 1971-1981) publish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second, it has also taken an appropriate measure as to how to prevent the women crimes. Throughout this study I have found out the following general tendency of the crimes by Korean women.

1. The number of the proportion of the women criminals among the whole is within 12 per cent or so, but since 1971 it has been increasing annually by the 11.7 per cent.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types are that the property crimes(especially fraud, embezzlement etc.) are considerably increasing, while the felonious crimes are slowly increasing, which shows the evidence that they are becoming more intellectual.

3. The economic instability i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motives and causes of the crimes, but some of the women crimes are not wholly rooted in the economic situation.

4. The analysis of the social backgrounds of the women criminals shows that (1) they belong to mostly the lower classes in the standard of living, (2) about sixty per cent of them didn't finished their primary school course or never received any primary education. (3) Speaking of the distribution of employment, about 40 per cent of the whole criminals had no job at all, and next they were the employees of commerce and industry. (4) Speaking of the age, most of the men criminals are in their 20s, while thirty per cent of the women criminals are in their 30s, and next in their 20s. (5) In comparison to the proportion of the exconvicts of men and women criminals, the women criminals were considerably lower than those of men, but the women criminals are increasing every year.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women criminals, I propose that the order to prevent the women criminals, the authorities concerned positively accomplish the following: (a) the least possible assistance of the means of living to the family which is unable to make a living and to the unfortunate women, (b) medical care assistance, and (c) the allowance of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Also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institutionalize the various facilities to consult the women suffering from many difficulties, and make every effort both to form their sound morality and to prevent the various chief causes of the women crimes.

In conclusion, for the women criminals,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Facilitie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ducate and remedy the women criminals to full-fledged members of society and return them to the society, and by doing these to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crimes again.